

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일자 : 96. 4. 6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96. 4. 8
- 다. 상정일자 : 96. 4. 29 (제44회 임시회 제6차총무위원회)

2. 제안 설명요지

- 가. 제안설명자 : 내무과장 이 병 일
- 나. 제안이유
 -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읍면에 위임된 사무중 담당업무의 소관실과 변경으로 관련규정 개정
- 다. 주요내용
 - 인장업 신고 사무 : 내무과 → 민원봉사실
 - 매장, 개장 화장신고 : 가정복지과 → 사회복지과
 - 상하수도 업무 : 도시과 → 환경보호과

3.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김재휴)

-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읍면에 위임된 사무중 담당업무 소관실과 변동 및 조례에 중복 규정된 업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

4. 질의 답변 요지

"생략"

5. 토론요지

"생략"

6. 심사결과

【원안가결】

7. 첨부 :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| | |
|----|--|
| 의안 | |
| 번호 | |

제출년월일 : 1996. 4.

제출자 : 화순군수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 따라 화순군행정기구 및 직제가 96. 1. 20자로 개정 공포되어 현 기구 및 직제에 따라 읍면 위임 조례를 개정(정비) 하려는 것임

2. 개정근거

-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공포 : 96. 1. 20 (제548호)
- 제2조 (실과의 설치)
 - 경영정책실, 민원봉사실을 신설하고 사회진흥과와 가정복지과를 폐지함으로써 분장 사무가 상호 이관되어 읍면 위임 사무 조정

3. 주요골자

- 내무과 소관 1건 → 민원봉사실로
- 가정복지과 소관 1건 → 사회복지과로
- 도시과 상수도업무 환경보호과 이관으로
 - 도시과 소관 18건 → 환경보호과로
- 조례 및 규정에 의거 삭제 → 3건
- 기타 신설 및 수정 → 1건

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"별표"를 다음 "별표"와 같이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표)

권 한 위 임

| 실과소명 | 위 임 사 무 명 | 근거 및 적용법률 | 수임기관 | 비 고 |
|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문 화 공 보 실 | 1. 공연신고 2. 향토문화재조사 및 관리 | ○ 공연법 제14조 2항 ○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제95조 제1항 | 읍면 " | |
| 민 원 봉 사 실 | 1. 인장업 신고사무 | ○ 인장업법 제3조 제1항 | " | |
| 내 무 과 | 1. 읍면6급이하 공무원 정기호봉승급 2. 읍면6급이하 공무원 휴직발령 3. 읍면 휴직공무원 복직발령 4. 읍면 계장 및 출장 소장 보직발령 5. 읍면8급이하 지방 공무원 특별임용 제청 6. 이 행정지도 7. 문서보관 및 폐기 (다만 문서를 폐기 할 때에는 군수에 게 사전에 보고하 여야 한다) 8. 삭 제 9. 읍면 지방공무원 시보해제 | ○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○ 지방공무원법 제63조 ○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○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○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○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○ 사무관리규정 제28조 및 제31조(대통령령 제13390호, '91. 6. 19) ○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| " " " " " " " " | |
| 재 무 과 | 1.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2. 삭 제 | ○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| " | |

권 한 위 임

| 실과소명 | 위 임 사 무 명 | 근거 및 적용법률 | 수임기관 | 비 고 |
|--------------|--|--|------|-----|
| 재 무 과 | 3.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| ○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및 제95조 제1항 | 읍면 | |
| | 4. 부동산 과세 표준액 조사사무 | ○ 지방세법 제187조 및 제234조의 15 | " | |
| 사 회 복 지 과 | 1. 위생 접객업소 지도 | ○ 공중위생법 제21조 | " | |
| | 2. 삭 제 | | " | |
| | 3.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| ○ 생활보호법 제17조 | " | |
| | 4. 생활보호대상자 생계 보호 금품 지급 | ○ 생활보호법 제9조 | " | |
| | 5. 노임소득사업 취로 대상자 선정 | ○ 생활보호법시행규칙 제16조 | " | |
| | 6. 노인소득사업 (직영) 집행 | ○ 생활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 | " | |
| | 7. 영세민 취로사업장 지도 감독 | ○ 생활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 | " | |
| | 8. 매장. 개장. 화장 신고 | ○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법률 제5조 | " | |
| 환 경 보 호 과 | 1.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가축사육 단속 | ○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34조 화순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 제6조 | " | |
| | 2. 건축법 제9조, 제15조 제2항 제72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정화조 설치 (변경) 신고 및 | ○ 오수,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| " | |

권 한 위 임

| 실과소명 | 위 임 사 무 명 | 근거 및 적용법률 | 수임기관 | 비 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
| 환경 보호과 | 준공검사 에 관한 업무 | ○ 같은법 제11조 및 시 행규칙 제15조 | 읍면 | |
| | 3. 공공하수도 관리 (도시계획 구역 내) | ○ 하수도법 제7조 | " | |
| | 4. 수도사용료 부과 징수 | 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25조 | " | |
| | 5. 수도폐전 신청 처리 | 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24조 | " | |
| | 6. 개인급수전 설치 허가 | 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17조 | " | |
| | 7. 급수사용료의 이의 신청 처리 | 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44조 | " | |
| | 8.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| 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38조 | " | |
| | 9. 급수신고 업무처리 | 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18조 제1항 | " | |
| | 10. 급수장치 관리의 무 승계업무 처리 | 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22조 | " | |
| | 11. 수도사용료 감액 신청처리 | 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37조 | " | |
| | 12. 급수공사의 승인 | 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6조 | " | |
| | 13.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| 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2 | " | |
| | 14. 급수공사의 시행 | 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7조 | " | |
| | 15. 급수공사의 준공 검사 | 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7조의 2 | " | |
| | 16. 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| 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15조 | " | |

권 한 위 임

| 실과소명 | 위 임 사 무 명 | 근거 및 적용법률 | 수임기관 | 비 고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-----|
| 환 경 보 호 과 | 17. 상수도 요금의 조정 | 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28조 | 읍면 | |
| | 18.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| 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30조 | " | |
| | 19. 정수처분 | 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40조 | " | |
| | 20. 급수장치 철거 | 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43조 | " | |
| 산 업 과 | 1. 수도묘관 공동방제업 | ○ 농업기본법 제3조 및 제9조 | " | |
| | 2. 수도비배관리 및 지도계몽 | ○ 농업기본법 제3조 및 제9조 | " | |
| | 3. 농약공급 | ○ 농업기본법 제3조 및 제11조 | " | |
| | 4. 농지전용신고 수리 | ○ 농지법 제37조 ○ 농지법 시행령 제40조 ○ 농지전용업무 세부규정 제33조(농림수산부훈령 제841호 95. 12. 29) | " " " | |
| 산 림 과 | 1. 신고에 의한(임야의) 임목 벌채 | ○ 산림법 제9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10호 | " | |
| | 2. 가로수 관리 | ○ 가로수관리규정 제14조 (산림청예규 제302호. 87. 1. 3.) | " | |
| | 3. 입산신고 | ○ 산림법 제98조 | | |

권 한 위 임

| 실과소명 | 위 임 사 무 명 | 근거 및 적용법률 | 수임기관 | 비 고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|-----|
| 지 역 경 제 과 | 1. 시장점포 사용허가 및 갱신 | ○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 제5조 | 읍면 | |
| 건 설 과 | 1. 2,000만원 이하 공사시행 | ○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마목 | " | |
| | 2. 도로점용 허가 | ○ 도로법 제22조, 제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| " | |
| | 3. 도로공작물 설치 허가 | ○ 도로법 제22조, 제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| " | |
| | 4.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허가 | ○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 | " | |
| | 5. 삭 제 | | " | |
| | 6.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시행시설물 사후관리 | ○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6조 | " | |
| 도 시 과 | 1. 토지 출입허가 | ○ 도시계획법 제5조 제2항 | " | |
| | 2. 토지 형질변경 허가(1,000㎡이하) 및 단속조치 | ○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92조 제1호 | " | |
| | 3.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조치 | ○ 건축법 제69조 제1항 및 제71조 제3항 | " | |
| | 4. ~ 21 삭제 | | " | |
| | 22. 연면적이 85제곱 | ○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| " | |

권 한 위 임

| 실과소명 | 위 임 사 무 명 | 근거 및 적용법률 | 수임기관 | 비 고 |
|-------|---|--|--|------------|
| 도 시 과 | <p>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읍.면 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)이하의 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의 증축.개축.재축 및 대수선</p> <p>23. 제7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50제곱미터이하의 증축.개축.재축.대수선 다만, 동조항동호아목 및 카목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건축물의 증축을 제외한다.</p> <p>24.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인 축사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만인 창고의 증축.개축.재축 및 대수선</p> <p>25. 죽목의 식재</p> <p>26. 별표1의 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. 다만, 휴게음식점. 일반음식점. 병원. 슈퍼마켓. 금융업소 및 학원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</p> <p>27. 생산품의 보관을 위하여 기존공장</p> | <p>근거 및 적용법률</p> <p>○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</p> <p>○ 도시계획법 시행규칙</p> | <p>읍면</p> <p>"</p> <p>"</p> <p>"</p> <p>"</p> <p>"</p> | <p>비 고</p> |

권 한 위 임

| 실과소명 | 위 임 사 무 명 | 근거 및 적용법률 | 수임기관 | 비 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
| 도 시 과 | 부지안에 설치하는 임시가설천막 | 제7조 제3항 | 읍면 | |
| 보 건 소 | 1. 삭 제 | | " | |
| | 2. 삭 제 | | " | |
| | 3. 삭 제 | | " | |
| | 4. 삭 제 | | " | |
| | 5. 대마재배허가등 | ○ 대마관리법 제5조, 제7조, 제9조, 제14조 | " | |
| | 6. 방역소독조치 및 자율방역지도업무 | ○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| " | |
| | 7. 배정 범위안의 방역약품 유통수불 및 방역장비관리등 | ○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| " | |
| | | | | |

신.구조문 대비표

| 실과명 | 현행 | | 개정안 | | 비고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| 위임사무명 | 근거및적용법률 | 위임사무명 | 근거및적용법률 | |
| 민원 봉사실 | | | 1. 인장업 신고사 무 | ○ 인장업법 제3 조 제1항 | |
| 내무과 | 8. 인장업 신고사 무 | ○ 인장업법 제 3조 제1항 | 3. 삭 제 | | |
| 재무과 | 2. 수입증 지 판매 및 인 지정 | ○ 화순군 수입 증지 조례 제7조 및 제9조 | 2. 삭 제 | | |
| 사 회 복지과 | 2. 유기장 휴업, 재개업, 폐업,신 고처리 | ○ 공중위생법 제10조 제2항 | 2. 삭 제 | | |
| | | | 8. 매장, 개장, 화장신 고 | ○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| |
| 환 경 보호과 | | | 3호 ~ 20 호 신설 | | |
| 가 정 복지과 | 1. 매장, 개장, 화장신 고 | ○ 매장 및 묘 지등에 관한 법률 제5조 | 1. 삭 제 | | |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실과명 | 현행 | | 개정안 | | 비고 |
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|
| | 위임사무명 | 근거및적용법률 | 위임사무명 | 근거및적용법률 | |
| 산림과 | 3. 입산허가 | ○ 산림법 제98조 | 3. 입산신고 | ○ 산림법 제98조 | |
| 건설과 | 5. 부동산 소유 사실 증명원 | ○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26조 제4항 | 3. 삭제 | | |
| 도시과 | 4호 ~ 21호 | | 4호 ~ 21호 삭제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